

대전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101345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대리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강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769,555원 및 그 중 974,328,401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487,603,217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각 2020. 1. 1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8. 27. 접수 제232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769,555원 및 그 중 974,328,40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12. 18.부터, 487,603,21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0. 1. 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20.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해 구상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8. 27. 피고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3291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 따라서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러하기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채권자가 그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개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취소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다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위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D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배당순위 제3순위자인 조세압류채권자 대전세무서는 원금 1,009,586,140원에 대해 배당비율 23.78%인 240,104,028원만을 배당받았을 뿐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장차 피고 D에게 추가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고, 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 D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길연

목 록

1. 부동산의 표시

- 가. 경기도 가평군 G 임야 687㎡
- 나.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451㎡
- 다. 경기도 가평군 I 임야 782㎡
- 라. 경기도 가평군 J 임야 4㎡
- 마. 경기도 가평군 K 임야 660㎡
- 바. 경기도 가평군 L 임야 670㎡
- 사. 경기도 가평군 M 임야 577㎡
- 아. 경기도 가평군 N 임야 1,822㎡
- 자. 경기도 가평군 O 임야 90㎡
- 차. 경기도 가평군 P 임야 12,127㎡

2. 근저당권의 표시

접수일자 : 2019년 8월 27일

접수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3291호

채권최고액 : 금 600,000,000원

근저당권자 : D (1959년 11월 5일생)

경기도 가평군 Q아파트, R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합니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이며,
- 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고,
- 라. 피고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수익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표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약정내용	약정일자	보증금액	신용보증의뢰인	연대보증인
제1약정	개별거래	2017.5.29.	495,000,000	농업회사법인 (주)B	C
제2약정	개별거래	2019.2.18.	684,000,000		
제3약정	개별거래	2019.2.18.	279,000,000		

-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

제를 할 경우,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②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③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 다. 피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3.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S은행 T금융센터지점(이하 '소외 S은행'이라고만 합니다.) 및 U은행 대전터미널지점(이하 '소외 U은행'이라고만 합니다.)에 아래표와 같은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신용보증서 참조).

번호	대출은행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1	S	2017.5.29.	V	495,000,000	2018.5.28.	550,000,000
2	U	2019.2.18.	W	684,000,000	2020.2.17.	760,000,000
3	U	2019.2.18.	X	279,000,000	2020.2.17.	310,000,000

4. 구상채권 및 사전구상채권의 발생

- 가.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최초 2019. 8. 31. 이자연체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갑 제3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참조), 원고가 소외 U은행에 2019. 12. 18. 위 제 2,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 974,328,401원(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691,906,103원 +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282,422,29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갑 제4호증

의 1, 2 각 대위변제증서 참조), 피고회사 및 위 C로부터 전액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위 C에 대하여 위 금 974,328,401원의 구상금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 또한, 원고는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금 477,000,000원의 사전구상금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나(갑 제5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 원고는 사고 발생 후 소외 S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없어 대위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만간 소외 S은행으로부터 이행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대위변제한 후 사전구상금이 아닌 구상금으로 채권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고 회사로부터 전액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12. 18.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갑 제6호증 기간별손해금률변동표 참조).

6. 대지급금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금 2,837,937원입니다(갑 제5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

7. 손해행위

- 가.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 1,454,166,338원(제 2, 3 신용보증약

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974,328,401원 + 대지급금 2,837,937원 +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 금 4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이자채권이 있는바, 피고 회사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 4일전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피고 D에게 2019. 8.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8. 27. 접수 제23291호,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부등본 참조).

- 나.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위 구상금채무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자 피고 D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는 상실을 초래하게 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8.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 (1) 금 977,166,338원(제 2,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974,328,401원 + 대지급금 2,837,9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74,328,401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 477,000,000원의 각 지급을,

나. 수익자인 피고 D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8.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9. 합의관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채권관리 담당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약정하였는바(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관리 담당영업점인 신용보증기금 대전재기지원단(갑 제4호증의 1, 2 대위변제증서 참조)의 관할법원인 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의뢰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및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47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1. 7.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S은행에 금 487,603,217원을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 그렇다면,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464,769,555원(제 2,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974,328,401원 +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487,603,217원 + 대지급금 2,837,937원) 및 그 중 제2, 3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974,328,4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12. 18.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487,603,217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